

간호학과 교내실습 운영세칙

제정 2026. 04. 13.

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경동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간호학과(이하 ‘학과’) 교내실습을 체계적·표준화·안정적으로 운영·점검·개선함으로써 학과 학생의 핵심간호술 수행능력, 임상추론능력 및 환자안전 역량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질 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 이하 ‘CQI’)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절차·책무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운영세칙은 교내에서 운영되는 기본간호학실습, 시뮬레이션실습, 건강사정실무, 자율실습, 핵심간호술 수행평가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인력·기자재·안전·인권·개인정보 보호 등 교내실습교육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각 항목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본 세칙 및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교내실습은 교육과정의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교내실습은 운영 전 과정에 CQI 체계를 적용한다.
③ 교내실습은 교과목별 실습지침서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강좌별 담당 교원 간 운영의 일관성과 분반별 학생 간 공통된 실습 경험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내실습은 학생 배치 비율, 자율실습 운영, 성취평가 및 환류 등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기준의 핵심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한다.
⑤ 교내실습은 안전·인권·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재발 방지 절차를 준수한다.

제4조(운영체계 및 책무) ① 학장은 교내실습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인력·예산·시설·규정의 적정성을 총괄하고, 주요 운영계획 및 개선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아 관리·감독한다.
② 시뮬레이션센터장은 교내실습실 운영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 기자재·시설 점검, 운영 기록 등을 관리하고, 정기 점검 결과와 조치 내역을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과목별 실습지침서 마련·개정, 운영의 표준화, 평가 및 CQI 환류 등을 담당하고, 운영 결과, 개선 사항 및 이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실습전담 직원 또는 실습조교는 실습실 관리, 학생지도 지원, 자율실습 지원, 물품·기자재 관리, 운영일지 기록 등 실습 운영의 실무를 수행한다.

제5조(교내실습 및 시뮬레이션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명칭) 교내실습 및 시뮬레이

선센터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대학 교내실습 및 시뮬레이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시뮬레이션센터장(이하 ‘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전공교과목 담당교원을 포함총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간사 1인을 두며, 회의 준비 및 운영 등을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시뮬레이션센터장의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임면 또는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내실습 운영계획 수립, 개선 및 이행 점검
2. 교과목별 실습지침서 마련·개정 및 운영
3. 실습지도교원 대 학생 배치 비율 관리 및 지원인력 적정성 검토
4. 기자재·소모품·시설 점검 및 관리 체계, 운영일지·점검표 등 기록 관리
5. 자율실습 운영 기준 검토
6.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 감염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7. 학생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대응 체계
8. 시뮬레이션센터(이하 ‘센터’)의 기본계획 및 개선안
9. 센터 이용 및 실습 운영 기준
10. 예산·결산 및 수익금 활용
11. 성과 평가 및 환류(CQI 반영 및 개선과제 관리)
12. 기타 교내실습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18조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19조에 따른다.

제11조(교내실습 교과 구성) 교내실습교육은 교과단위로 편성, 운영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교내실습 이수단위 및 시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교내실습 교과목은 1

주 2시간씩 15주 이상 수업을 1학점(학점당 1:2 비율)으로 한다. 세부운영은 대학의 학점·시수 운영 기준 및 인정 시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3조(교내실습 학생 수) 교내실습 강좌 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한다.

제14조(교내실습 지원인력) ① 교내실습교육 지원인력은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상근 근무자인 시뮬레이션센터의 직원 또는 실습조교(간호사면허 소지자)로 한다.

② 교과목 책임교수는 실습 운영 전반의 총괄책임을 지며, 지원인력의 역할·업무를 명확히 배정한다.

③ 자율실습실은 정기·상시 개방할 수 있으며, 개방 시간 중에는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전담 인력이 상주하여 학생의 자율실습을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④ 지원인력은 실습 운영·안전·인권·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및 재교육 기록을 관리한다.

⑤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 대체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 및 촬영자료 관리) ① 교내실습 장면 촬영·녹화를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활용 목적·보관 기간·접근 권한·폐기 절차를 안내한다.

② 촬영자료 및 평가 자료는 최소 접근 권한 원칙에 따라 관리하며, 교육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③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보관·이관·폐기는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보관·열람·제공·폐기 이력을 관리한다.

제16조(교내실습 학습성과 적용) ① 교내실습교육의 학업 성취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교내실습 수업계획서 및 실습지침서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평가한다.

②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교내실습지도교원에 의해 평가된 실습 평가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단, 교과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교과목별로 학업성취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 성취향상 및 교과목 수업 개선에 반영한다.

제17조(교내실습교육 실습지침서 구성 및 활용) ① 교내실습교육 교과목별로 실습지침서를 마련하고 활용한다(학생용·지도자용 포함).

② 실습지침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교과목 학습성과 및 평가 기준(루브릭 포함 가능)

2. 실습내용·절차·준비물·실습 일정(분반 운영 포함)

3. 학생 수행 기준(핵심술기 단계, 체크리스트 등)

4. 안전·감염관리·윤리(환자역할/표준화환자 포함) 및 비상대응 절차

5. 물품사용·대여·폐기 절차 및 실습실 이용 수칙
 6. 사전학습, 성취향상 지원(재시험/추가과제 등) 안내
- ③ 실습지침서는 매년 또는 필요 시 개정하며, 개정 사유, 적용 시점 및 변경 범위를 명시한다.

제18조(자율실습) ① 자율실습은 학생의 실무능력 증진과 자율적인 연습을 위해 실습실을 일정시간 이상 개방하여 운영한다.

- ② 자율실습실은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최소 주당 4시간 이상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학생 규모와 수요를 고려하여 개방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 ③ 자율실습 개방 시간 중에는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전담 인력이 상주하여 자율실습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 ④ 자율실습실의 개방일과 시간은 교과목 운영 및 실습실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사전 공지 한다.
- ⑤ 자율실습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여건에 따라 분반별 배정 또는 현장 접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 ⑥ 실습생은 실습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실습 시간을 준수하고, 실습 전 안전수칙 및 물품사용 절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실습 물품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며, 파손·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사용 후 물품은 정리 정돈 하고,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은 분리수거 원칙을 준수한다.
- ⑧ 자율실습은 학생의 자율 선택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의무시간 부과 등 강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성취향상 지원(보충실습 등)의 경우 교과목 지침서에 근거하여 별도 운영할 수 있다.
- ⑨ 기타 자율실습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따른다.

제19조(시뮬레이션실습 계획 수립) ① 시뮬레이션실습은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학기별로 계획한다.

- ② 시뮬레이션실습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1. 학습목표 및 학습성과 연계성
 2. 실습 유형 및 시나리오 개요
 3. 평가 기준 및 디브리핑
 4. 안전관리 및 윤리 준수

제20조(시뮬레이션실습 운영) ① 시뮬레이션실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학습: 시나리오 개요, 학습목표, 평가방법을 안내하고, 사례 기반 문제 중심 학습(PBL)방식으로 사전학습을 실시한다.
2. 시뮬레이션 모듈 운영: 팀별로 사례에 대한 임상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시나리오

구동 전 사전 연습을 실시한 후 팀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구동한다.

3. 디브리핑: 시뮬레이션 종료 후 학습목표 달성 여부, 임상 판단 과정, 의사소통 및 팀워크에 대해 구조화된 디브리핑을 실시한다.

② 시뮬레이션실습 교육시간은 학점과 실습의 비율을 1:2로 적용하며, 1학점당 총 30시간으로 운영한다.

③ 시뮬레이션실습 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나리오 구동 시 팀별 참여 학생 수는 8명 이하로 제한한다.

④ 시뮬레이션실습 지침서는 실습교과목별로 학생용과 지도자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교과목의 학습성과와 시뮬레이션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운영 절차, 학습활동, 평가방법 및 디브리핑 지침을 포함함으로써 학과의 학습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시뮬레이션실습지침서의 구성 및 활용) ① 위원회는 교과목별 실습지침서를 학생용과 지도자용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활용하도록 관리한다.

② 실습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과목 학습목표 및 학습성과, 운영 개요
2. 사전 브리핑, 실습 수행, 디브리핑의 운영 절차 및 진행자 역할
3. 시나리오 운영 매뉴얼(준비물, 환경세팅, 역할, 시간배분, 진행 흐름)
4. 평가 기준 및 평가도구 적용 방법(루브릭·체크리스트, 평가자 유의사항)
5. 안전 및 윤리 지침(감염관리, 침습술기 안전, 학생 인권·심리적 안전)
6. 비상 대응 절차(사고·위험상황 보고 및 조치)
7. 장비 및 환경 관리 지침(점검, 사용, 유지보수, 소독·정리)

③ 지도자용 지침서는 분반 간 운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제22조(시뮬레이션 표준화환자 운영) 표준화환자(Standardized Patient; SP, 이하 ‘SP’) 활용 실습은 SP 모집·선정, 사전 오리엔테이션, 역할 표준화 훈련 및 교육, 안전·윤리 교육,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안내와 동의 절차를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23조(가상·온라인 시뮬레이션 운영) ① 가상·온라인 시뮬레이션은 학습성과 달성을 기준으로 설계·운영하며, 출결·참여 확인 기준 등을 마련한다.

② 평가를 포함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자료의 저작권을 준수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저장·공유·폐기 절차를 마련한다.

제24조(시뮬레이션실습 평가기준) 시뮬레이션실습 성적은 교과목 평가 기준에 따라 반영하며, 세부 비율은 교과목 운영계획서에 명시한다.

제25조(실습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 ① 교내 실습실 기자재 관리는 대학의 「대학 실험

실습기자재 관리 규정」에 따른다. 실습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의 총 책임자는 학장으로 하고, 교내 실습실 기자재 및 소모품의 관리는 센터장이 총괄한다.

② 기본간호학실습 및 자율실습에 대한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는 기본간호학 실습조교가 담당하며, 센터에 대한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는 센터 직원 또는 실습조교가 담당하며, 총괄은 센터장이 한다.

③ 센터 직원 및 기본간호학 실습조교는 실습 기자재 및 소모품 현황을 학기 당 1회 이상 조사하여 센터장 및 기본간호학 담당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습 기자재는 정기점검·유지보수·소독·청결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제26조 (기자재의 손·망실 처리) ① 실습 기자재가 도난·망실·파손되었을 때 센터 직원 또는 실습조교는 손·망실 된 실습기자재 품목과 사유서를 대학의 보고체계에 따른다.

② 실습 기자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센터 직원 또는 실습조교는 센터장에게, 기본간호학 실습조교는 기본간호학 담당교수에게 보고하고, 대학의 보고체계에 따른다.

③ 실습 기자재 불용품 발생 시 센터 직원 또는 실습조교는 기자재 전문 업체에서 기기상태를 점검 받은 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활용가치가 없는 기자재는 불용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 대학의 보고체계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안전관리) ① 교내실습 교원과 학생은 연 2회 이상 실습실 안전교육을 이수한다.

② 실습실의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 및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 점검 후 기록하여 보존한다.

③ 교내실습 안전사고 발생 시 실습담당교수는 상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별표1]의 「간호대학 교내실습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④ 감염 노출 또는 화재·정전·설비 고장 등 비상 상황 시 대학의 대응 절차를 따른다.

제28조(학생 인권보호 및 성희롱 예방) ① 학생은 교내실습 중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 등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과는 교원과 3·4학년을 대상으로 교내실습 시작 전에 연 2회 이상 인권 보호 및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생 인권 침해 및 성희롱 피해 발생시 [별표2]의 「간호대학 교내실습 학생인권 침해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보호·상담·조치를 제공한다.

제29조(표준화환자 인권) ① SP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부적절한 요구·차별·모욕적 표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② SP는 학습자의 개인적 안전과 팀 차원의 심리적 안전감을 증진하여, 학생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동료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③ SP 참여 관련 동의서, 촬영·녹화 동의, 평가자 교육 기록 및 운영 결과는 문서로 관리한다.

제30조(학업성취 성과평가 및 결과 분석) ① 학과는 교내실습 교과목별 학업성취 달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의 성취 향상(재학습, 추가 과제, 재평가 등)과 교내실습 운영 개선(CQI)에 반영한다.
- ③ 분석 및 환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한다.

제31조(교내실습 운영기록 및 점검표 관리) ① 교내실습교육 운영의 적정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작성·관리한다.

1. 교내 실습 운영일지
 2. 자율실습 운영대장
 3. 기자재·시설 점검표
 4. 소모품 관리대장
 5. 안전교육 및 인권교육 이수대장
 6. 사고·인권침해 보고서 및 조치 결과 기록
- ② 기록의 보관 기간과 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32조(보고서 및 자료관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연 1회 이상 작성·관리한다.

1. 부서별 운영계획서
 2. 부서별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3. 학과 사고대응 매뉴얼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한다.
1. 실습지침서(학생용·지도자용), 배치표, 실습지도 일지, 평가도구 및 성적 근거
 2. 안전·인권 교육 자료, 비상연락망,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사고 처리 기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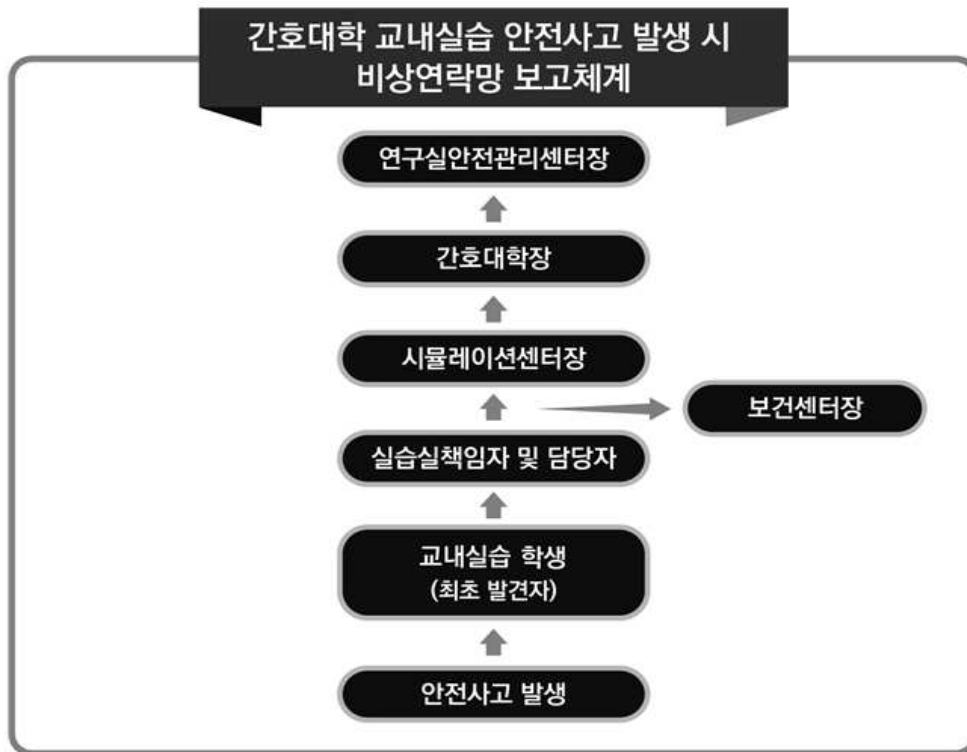
제33조(준용)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56조에 따른다.

제34조(운영세칙 개정) 본 운영세칙의 개정은 「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 제57조 제2항에 따른다.

부 칙

본 운영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간호대학 교내실습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별표2] 간호대학 교내실습 학생인권침해 보고체계

